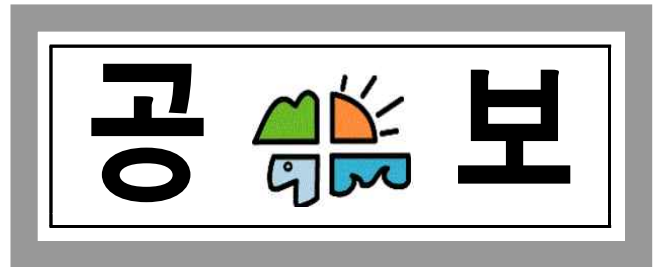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86호 2023년 8월 22일(화)

입법예고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속초시 공고 제2023-852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광객 및 대형건축물 등 주차수요 증가로 만성적인 주차난이 보다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주차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계적인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주차수급실태조사의 방법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근거 마련(안 제1조의2 및 안 제1조의3)

나. 담장 허물기 등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시민참여 주차장 확충 추진(안 제20조의2)

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주차요금 조정(안 별표 1)

라. 상위법령 필수위임사항 규정(안 제9조의2, 안 제11조의3, 안 제18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등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1) 주소: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
- (2) 문의: 전화(033-639-2188), 팩스(033-633-5006),
이메일(khee13@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 방문 등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교통과(033-639-2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입법안은 속초시 공보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

③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이유없이”를 각각 “이유 없이”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당일주차 :”를 “당일주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 :”를 “주차:”로 한다.

제6조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하역주차구간 지정)”을 “(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상주차장중”을 “노상주차장 중”으로 한다.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제2항 중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를 “시행규칙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월이내”를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은행법」 제86조”를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대이하”를 “8대 이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규칙 제11”을 “시행규칙 제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20대이상”을 “20대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별표5호”를 “별표 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②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 공영주차장(노상·노외주차장)				속초해수욕장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최초20분	이후최초 10분 (1구획당)	이후 매10분당 (1구획당)	1일 주차 요 금	비수기(성수기외 기간)			성수기(7.1~8.31)		
					2시간이내	2~8시간	8~24시간	2시간이내	2~8시간	8~24시간
주차요금	무료	600원	300원	6,000원	1,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4,000원	6,000원
월정기간	주간 75,000원				야간 56,000원			주·야간 120,000원		

(비고)

-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할 수 있다
-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00
- 시장은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주차장 및 주차목적과 방법이 동일한 인근 공영주차장은 이용객의 편의와 요금체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별도 규정한 시설사용요금표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u> <u>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u> <u>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u> <u>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u>

<신 설>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확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2.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

③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

제4조(가산금)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1. 삭 제
2. (생 략)
3.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 ① (생 략)
- ②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또는 대문 허물기 등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 민영주차장 설치 지원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

 ----- 이유 없이 -----

 -----.

2. (현행과 같음)

3. ---- 이유 없이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또는 당일주차 :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2. 월정기 주차 : 월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노상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① (생략)
-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

-----.

1. ----- 당일주차:

2. ----- 주차: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

사유 없이-----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① (현행과 같음)
-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 ③ -----

----- 「공유재산 및

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④ ~ ⑥ (생략)

제9조(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필요시 시장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신 설>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 -----
----- 노상주차장 중 -----

-----.

제9조의2(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

<신 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 중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에 한하여 총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신고 대상 차량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 중 주·야간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게 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16조

3. ~ 6. (현행과 같음)

② -----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

제11조의3(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생략)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생략)

②부설주차장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소멸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
-----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

-----.

할 수 없다.

③ (생 략)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등) ①·② 삭 제

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받는 자는 노외주차장의 예에 준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해당 지역의 별표1의 월정기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등)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

----- . .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 시행규칙 제13조-----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

③ (생 략)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 략)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구성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 해당

-----.

3 .

----- 6월
이내-----.

4 .

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

 ----- 「한국은행법」 제
 8 6 조

 --.

②-----

 -----.

1. · 2. (현행과 같음)
- 3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
 가업자가 6월 이내

 -----.

4 .

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 ③ (생략)

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5호의 기준에 준한다.

⑤ 삭제

<신설>

----- 8대
이-----하
-----.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
----- 시행규칙 제11-----
-.

② (현행과 같음)

③----- 따라 -----

----- 해당 -----
----- 20대 이상-----
-----.
----- 따른 -----

-----.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별표 5호-----
-----.

⑥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제20조(과징금 처분) ①·② (생략)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제20조의2(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u>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 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 려는 사람</u> <u>②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 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 <u><삭 제></u>
---	--

관 계 법 령

□ 주차장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② · ③ (생략)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생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략)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 ② (생략)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 ② (생략)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④ (생략)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 7. (생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생략)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생략)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 ③ (생략)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 3. (생략)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붙임 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